
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636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6.

발의자 : 강훈식 · 이원욱 · 안호영

백혜련 · 김영진 · 김경협

김상희 · 임종성 · 김진표

이수혁 · 윤관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판문점 선언,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 · 사회 · 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논의 · 준비되고 있음.

그러나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)의 업무 영역에 외국철도 및 남북 연결 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지만 북한의 영역 내의 철도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임.

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북한은 외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‘남북 연결 철도망’이라는 표현을 감안할 때 남한의 철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북한철도의 개량,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임.

한편 공단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19조 및 「철도시설자산 관리 위·수탁 계약서」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법에는 공단의 점용료 관련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. 더불어 한정된 국토 자원에 비해 철도개량으로 발생되는 폐선부지와 폐역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산을 개발·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공단의 사업 영역에 북한철도의 건설, 철도시설 관리에 따른 철도국유재산의 개발·운영 및 부동산의 공급, 임대를 추가하여 남북 관계 발전 및 여건조성 시 남북한 철도망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도록 하고 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철도국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제2호·제4호·제9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).
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외국철도 건설과”를 “북한철도와 외국철도의 건설 및”으로, “철도망 및”을 “철도망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건설에”를 “건설 및 관리에”로, “지역의”를 “지역과 철도국유재산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“취득 및”을 “취득, 공급, 임대 및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4호 중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 및 점용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7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| 제7조(사업) ----- --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| 2. 북한철도와 외국철도의 건설 및-----철도망과----- ----- |
| 3. (생 략) |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철도시설 <u>건설</u> 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<u>지역</u> 의 개발·운영 | 4. ----- <u>건설</u> 및 관리에--- ----- ---- <u>지역</u> 과 철도국유재산의-- ----- |
| 5. ~ 8. (생 략) | 5. ~ 8. (현행과 같음) |
|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<u>취득</u> 및 관리 | 9. ----- ----- <u>취득</u> , <u>공급</u> , <u>임대</u> 및----- |
| 제17조(자금의 조달 등)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달한다. | 제17조(자금의 조달 등) ① ----- ----- 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철도시설 <u>사용료</u> | 4. ----- <u>사용료</u> 및 <u>점용료</u> |
| 5. ~ 7. (생 략) | 5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